

폐유기물 재처리공정 점검 체크리스트

구분	점검항목	규정	결과
1. 위험물질			
1-1.	원료, 부원료, 제품 등은 위험물인가? - 인화성액체, 인화성가스, 급성독성물질 등	규칙 별표-1	
1-2.	원료, 제품 등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확보 및 교육 실시 여부(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제외)? - 명칭, 물리적 위험성, 건강 유해성, 보호구 등	산안법 제41조	
1-3.	원료, 제품 등의 경고표지 부착 여부? - 물질명칭, 그림문자, 신호어, 유해위험문구, 예방 조치문구, 공급자 정보 등	산안법 제41조	
2. 원료·제품탱크			
2-1.	설계압력은 적정한가?		
2-2.	통기관(통기밸브) 및 긴급통기설비 설치여부?	규칙 제268조	
2-3.	인화성액체인 경우 화염방지기 설치여부?	규칙 제269조	
2-4.	공정지역, 사무실, 조정실 등과의 안전거리(20 m) 확보여부?	규칙 제271조	
2-5.	저장탱크 주변에 방유제의 적정설치 여부? - 용량, 배수밸브 개폐상태, 손상부위 등 확인	규칙 제272조	
2-6.	저장탱크 액위계 및 액위경보장치 설치 여부?	규칙 제274조	
3. 증류탑 등			
3-1.	과압방지용 안전밸브 설치 여부?	규칙 제261조	
3-2.	안전밸브의 전·후단에 차단밸브 설치 여부? * 복수의 안전밸브 등을 제외하고 차단밸브 설치 금지(CSO형으로 설치)	규칙 제266조	
3-3.	안전밸브 배출물질의 안전한 처리여부? - 플래어스택, 냉각드럼, 회수설비 등의 설치	규칙 제267조	
3-4.	온도계, 압력계 등의 설치여부?	규칙 제273조	
3-5.	온도경보장치, 압력경보장치 등의 설치 여부?	규칙 제274조	
3-6.	긴급차단밸브 또는 긴급방출밸브 설치 여부?	규칙 제275조	

구분	점검항목	규정	결과
4. 보일러			
4-1.	안전밸브 및 압력제한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과압을 해소할 수 있는가?	규칙 제116조 등	
4-2.	고저수위 조절장치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보일러의 액위를 안전하게 조절하는가?	규칙 제118조	
4-3.	화염검출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화염이 꺼질 경우 연료는 차단되는가?	규칙 제119조	
5. 정전기 등 점화원 관리			
5-1.	저장탱크, 증류탑 등의 접지 여부?	규칙 제325조	
5-2.	원료·제품 입·출하 설비의 접지 및 본딩 여부?	규칙 제325조	
5-3.	저장탱크 입하배관의 침액(Dipping) 구조 여부?	규칙 제325조	
5-4.	제품을 드럼 등 이동식용기로 이송할 경우 접지 및 본딩 여부?	규칙 제325조	
5-5.	제품을 드럼 등 이동식용기로 이송할 경우 유증기 제거 여부?	규칙 제232조	
5-6.	제전복, 제전화, 제전장갑, 도전성바닥 등 인체의 정전지 제거 여부?	규칙 제325조	
5-7.	망치, 랜치 등 수공구의 방폭형 사용여부?	규칙 제325조	
6. 정비·보수·청소 작업			
6-1.	화기작업, 밀폐공간작업 등의 작업허가서 발행 여부?	산안법 제49조의2	
6-2.	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 여부?	규칙 제619조	
6-3.	저장탱크 등 내부의 내용물 배출 및 퍼지 여부?	산안법 제49조의2	
6-4.	내용물 배출 후 밸브 차단 및 맹판 설치 여부?	산안법 제49조의2	
6-5.	작업 전 인화성 가스농도 및 산소농도 측정 여부?	산안법 제49조의2	
6-6.	밀폐공간 작업 시 출입을 금지하고 대피용 기구, 송기마스크 비치 등의 여부?	규칙 제619조	

구분	점검항목	규정	결과
7. 기타			
7-1.	저장탱크 및 공정지역을 폭발위험장소로 구분 여부? - 인화점이 60℃ 이하인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	규칙 제230조	
7-2.	저장탱크 및 공정지역에 가스감지기 설치 여부? - 설정치 : LEL의 25% 이하, 비상전원(баттери) 연결 여부	규칙 제232조	
7-3.	증류탑 지지대, 건축물의 기둥 등의 내화조치 여부? - 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한 경우에 한함	규칙 제270조	
7-4.	전기기계기구를 방폭형으로 설치 여부?	규칙 제311조	
7-5.	유해·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절차 작성 및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?	산안법 제49조의2	
7-6	화재·폭발 등의 화학사고에 대한 시나리오 선정 및 비상대응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가?	산안법 제49조의2	